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303
------------------	-----

제출년월일 : 1998.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 설치 및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3년간의 지방세종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2/1000 적립)
- 기금운용·관리 : 재난관리기금계좌 설치 관리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
- 기금용도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
 -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 재난발생(우려)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이행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 재난발생(우려)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 안전진단, 이주소요 비용에 대하여 용자 가능토록 규정

□ 제정근거

-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③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 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재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총괄계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계현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